

범주: 학생 발행일: 2010년 10월 7일 번호: **A-190**

주제: 복수 학교의 학교 운영 및 학교 건물 관리 절차의 현저한 변경 페이지: 1 / 2

## 변경 내용 요약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자 교육감 규정 A-190을 대체합니다.

### 변경 사항:

-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변경 안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학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 I.A).
- 모든 과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칭하기 위한 "할당된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I.C).
- "할당된 교육위원회("CEC")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 I.D).
- "과밀 지역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1, § I.E).
- 교육감 규정 A-660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이 규정에 사용된 "학부모"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 I.F).
-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라는 용어에 제75학군 조직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현재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영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배치에 대한 변화나 현재 교육청(DOE)이 운영하지 않는 새로운 장소에서 개교하는 신규 학교 또는 기타 시설의 공동 배치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p. 1, § I.G).
- DOE 가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합니다(p. 1, § I.H)
- 교육적 영향 선언문("EIS") 및 건물 사용 계획 작성에 사용하기 위한 견본 지침을 명시한 새로운 부록을 추가합니다(p. 2, § II.A.1 및 부록 번호 1; pp. 2-3 § II.A.2(a)(ii) 및 부록 번호2).
- 하나 이상의 비차터스쿨과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의 공동 배치와 관련하여 EIS 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명시한 새로운 섹션을 추가합니다(pp. 2-3, § II.A.2).
- 할당된 학교 또는 과밀 학교, 학부모, CEC, 학교 리더십팀, 기타 해당 단체에게 EIS 사본을 접수 및 배포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합니다. (pp. 3-4, § II.A.3)
-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안에 대한 일정 결정, 의제 설정, 공동 공청회의 안내문 제공 등의 절차를 수립합니다. (pp. 4-5, § II.B).
- 교육감이 EIS 를 개정한 후 공동 공청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p. 5, §II.B.5).
- 교육정책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가 효력을 개시하는 시점을 설정합니다(p. 6, § II.C.5).
- 두 개 이상의 학교들이 공동 배치된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건물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러한 건물위원회를 위한 최소 회의 일정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pp. 6-7, § III.A).
-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이 하나 이상의 비차터스쿨과 공동 배치된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공동 공간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의 DOE 학부모와 교사 대표를 해당 학교의 SLT 구성원이 선출하도록 지정합니다(p. 7, § III.B.1).

범주: 학생

발행일: 2010년 10월 7일

번호: **A-190**

주제: 복수 학교의 학교 운영 및 학교 건물 관리 절차의 현저한 변경

페이지: 2 / 2

-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에서 요구하듯이 교육감 또는 그 지명자는 자금 출처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 건물 내의 차터스쿨의 공동 배치를 위한 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안을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차터스쿨이 그러한 승인을 얻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7-8, § III.B.2).
- 규정 전체에서 “D75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D75 학교 조직”으로 수정합니다.
- 조직의 대표가 누구이며 공동 공청회 참여에 대한 제안서 및/또는 초대장을 수령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합니다.
- 교육감이 승인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매칭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는 그러한 증액이나 업그레이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공동 배치 비차터 공립학교에 대해 차터스쿨의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p. 7, § III.B.2).
- 이러한 규정에 관한 질문을 담당할 연락 담당실의 이름을 업데이트합니다.

## 개요

2009년 뉴욕시 교육법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변경을 할 때 모든 제안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나 일반인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뉴욕시교육청(이하 교육정책 위원회(PEP)라 칭함)이 교육감의 학교 폐교나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승인하도록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기존의 공립학교 건물에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뉴욕주 차터스쿨법(New York State Charter School Act) 1998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 이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의 각 개정 사항을 구현합니다.

### I. 용어 정의

- A.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제안의 경우 "할당된 학군"이란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위치하는 학군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학년에 관한 제안의 경, 이 용어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위치하는 지리적 경계 내의 학군을 의미합니다.
- B. "할당된 학교" 및 "과밀 학교"라는 용어는 이 제안에서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개별 교육 기관과 제안의 결과 새롭게 공동 배치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학교의 학년 구성을 확장하는 제안의 경우 이 용어는 확장할 학교와 공동 배치되는 학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C. "할당된 학생"과 "할당된 학부모"라는 말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를 위한 제안 당시 과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및 그 학부모를 의미합니다.
- D. "과밀 지역 교육위원회(CEC)" 또는 "과밀 CEC 또는 위원회"라는 말은 할당된 학군을 대표하는 CEC를 의미합니다.
- E. "과밀 지역위원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제안의 경우 할당된 학교가 위치하는 학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속하는 지역위원회를 말합니다. 고등학교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 이 용어에는 할당된 학교가 위치하는 지리적 경계 내의 학군에 위치하는 지역위원회가 포함됩니다.
- F. 교육감 규정 A-660의 정의에 따라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관계 또는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학부모의 정의에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 의붓부모, 법적 보호자, 양부모, 학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G.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이란 현재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서의 학교 또는 제75학군 학교 조직의 단계적 폐교, 학년 재구성, 이전, 공동 배치 등을 의미합니다.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에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의 변경, 학군 배정 경계의 변경 또는 현재 학교나 기타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설에 영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배치가 포함되지 않으며 새로운 장소에서 개교하는 학교 또는 현재 DOE가 운영하지 않는 기타 시설의 공동 배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H.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는 건물의 가치, 외관 또는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건물의 영구적인 추가 또는 변형이나 새로운 용도에 맞도록 건물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추가 또는 변형은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되거나 기존 건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제거할 경우 건물이나 물체 자체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전술한 사항 이외에도 도색, 바닥재 교체, 전기 및 컴퓨터 네트워크 배선 설치, 창문용 에어컨 추가 등과 같은 추가나 변형의 비한정적 목록은 시설 업그레이드에 해당합니다. 교육감은 제안된 프로젝트가 시설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 II. 폐교 및 학교 운영 변경을 위한 교육감 제안의 일반인 검토 및 의견 제출 절차

### A. 교육적 영향 선언문

1. 교육감이 폐교 또는 학교 운영에 대한 현저한 변경을 제안할 경우(예: 단계별 폐교, 학년 재구성, 이전, 공동 배치) 교육감은 교육적 영향 선언문("EIS")을 준비합니다<sup>1</sup>. 그러한 EIS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할당된 학교의 현재 및 향후 학생 등록
  - b. 학교 건물에 대한 향후 수요
  - c. 폐교 또는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세분화된 사항
  - d. 폐교 또는 운영의 현저한 변경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및 절감액
  - e. 폐교의 잠정적 처분 가능성
  - f. 제안이 할당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g. 학교 건물을 기타 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제안 또는 잠정적 사용의 요약
  - h. 폐교 또는 직원의 수요, 교육 비용, 행정, 교통,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의 활용에 대한 변경이 미치는 영향
  - i. 학교 건물의 종류, 연령, 물리적 상태, 보수, 에너지 비용, 학교 건물의 최근 또는 예정된 개조, 건물의 특수 기능
  - j. 폐교 또는 운영을 변경한 후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할당된 학군 학교의 능력,
  - k. 해당 학교가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 달성, 등록 평가 중인 학교 및/또는 차별화된 책임 상태(개선 필요, 시정 조치, 구조조정) 등으로 확인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학교의 학습 성과와 관련된 정보.
2. 기존 공립학교 건물에 위치 및/또는 공동 배치된 차터스쿨에 대한 EIS.
  - a. 기존 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려는 제안을 위해서 EIS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공립학교 건물을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는 장소로 선정된 이유.
    - ii. 건물 활용 계획.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건물 활용 계획에 대해 제안된 지침은 부록 번호 2의 본 규정에 첨부되어 있음):

<sup>1</sup> EIS를 위해 제안된 지침은 부록 번호 ~의 규정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1. 각각의 제안은 고유하므로 EIS에는 해당 제안 사항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a) 차터스쿨과 비차터스쿨 사이의 교실 및 행정 공간의 실제 할당 및 공유. 할당을 할 때 DOE의 교육 범위("범위")에 따라 건물의 각 학교에 할당되는 교실의 수와 종류를 지정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이 범위에 따라 할당되지 않는 교실의 수와 종류도 지정합니다. 이 범위에 따라 할당되지 않은 공간은 공동 배치 학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할당됩니다. 공평한 할당을 결정할 때 DOE는 공동 배치 학교의 상대적 등록 인원, 공동 배치 학교의 교육 및 체계적 요구사항, 건물 내 잉여 공간의 물리적 위치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b) 차터스쿨과 비차터스쿨이 공동 자원 및 공간을 협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 여기에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차터스쿨 학생과 마찬가지로 비차터스쿨 학생도 유사한 방법과 시간에 그러한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함.
- (c) 제안된 할당과 이 하위절 (가) 및 (나)에 명시된 일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제안된 할당 및 공동 사용으로 공립학교 건물의 공평하고 동등한 사용이 가능할지를 판단.
- (d) 건물 안전 및 보안
- (e) 공동 배치 학교가 사용할 의사교환 전략
- (f) 본 규정의 제 III.B.1절에 따른 공동 공간위원회 설립을 포함한 공동 배치 학교가 사용할 협력적인 의사결정 전략.
- iii. 건물 사용 계획의 개정을 위해서는 뉴욕 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2590-g 하위절 7에 따른 요건에 따라 PEP 승인이 필요합니다.
3.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을 변경하는 학년도의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전에 교육감은 DOE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EIS를 게시하며 과밀 학교 교무실에 EIS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PEP, 과밀 지역교육 위원회(CEC), 과밀 지역 위원회, 지역 학군장, 과밀 학교의 리더십팀(SLT),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ELL"),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 등에 EIS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관련 제안의 경우 교육감은 EIS 사본을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CHS")에 제출하며 제 75학군("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에 대한 제안의 경우 교육감은 EIS 사본을 D75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고등학교와 관련된 제안서의 경우, 교육감은 모든 지역사회 위원회와 고등학교가 위치하는 보로의 CEC에게 EIS 사본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올바른 접수는 EIS 사본을 PEP 회장, 과밀 CED 행정 보좌관, 과밀 지역위원회 회장 또는 대표, 과밀 지역 학군장, SLT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과밀학교 교장, CCHS 회장 또는 대표 및 D75 위원회 등에게 전달 또는 특급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4. 학군의 지역 학군장은 그러한 제안 통지서 및 모든 관련 개정안을 모든 과밀 부모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할당된 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문에는 교육적 영향 선언문 사본 또는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공동 공청회의 날짜 및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섹션 II.B 참조). 고등학교에 관한 제안의 경우, 과밀 학부모에 대한 통지문은 할당된 학군의 지역 학군장 및 제안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학군장이 공동으로 제공합니다. 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에 관한 제안의 경우 할당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지문은 D75 학군장이 제공합니다.

## B. 공동 공청회

1. 폐교나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에 대해 교육감은<sup>2</sup>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과밀 CEC와 SLT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CCELL 및 CCSE를 공동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고등학교에 관한 제안의 경우 CCHS도 공동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에 관한 제안의 경우 D75 위원회를 공동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 공동 공청회 일정
  - a. 그러한 공동 공청회는 교육적 영향 선언문을 접수한지 30일부터 45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b. EIS를 접수하기 전에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 또는 담당실은 과밀 CEC 회장 또는 대표자와 SLT 구성원 자격을 가진 과밀학교의 교장, CCELL 및 CCSE의 회장 또는 대표, 고등학교 또는 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의 경우 CCHS 및 D75 위원회의 대표에게 잠정적인 공동 공청회 날짜 및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들 각각의 그룹은 이러한 날짜의 선택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대안적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EIS에 접수하기 전에 공청회 날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피지명인이 해당 법률 요건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3. 공동 공청회 의제
  - a. 공동 청문회 이전에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 또는 담당실은 공동 청문회의 제안된 공동 의제를 과밀 CEC의 회장 또는 대표자와 SLT 구성원 자격을 가진 과밀학교의 교장, CCELL 및 CCSE 회장 또는 대표자, CCHS와 D75의 회장 또는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EC, SLT, CCELL, CCSE와 CCHS 및/또는 D75 위원회에게는 제안된 공동 의제에 참여하고 그러한 의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b. 그러한 의제에는 교육감,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또는 폐교 제안의 경우 부교육감의 제안에 대한 간략한 발표가 포함됩니다. 그러한 의제에는 과밀 CEC, 과밀학교의 SLT, CCELL, CCSE, CCHS 및/또는 D75 위원회의 간략한 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밀 CEC, 과밀학교의 SLT, CCELL, CCSE, CCHS 및/또는 D75 위원회는 교육감,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또는 폐교의 경우, 부교육감의 간략한 제안 발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할당 시간과 아래 명시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감 피지명인 또는 부교육감, CEC, SLT 또는 CCELL, CCSE, CCHS 또는 D75 위원회의 발표는 시간이 적절하게 제한되며 의견을 제시할 일반인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sup>2</sup> 폐교 안의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과 과밀 CEC 및 SLT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안의 경우 교육감 또는 그 피지명인, 과밀 CEC 및 SLT가 공청회를 엽니다.

4. 교육감은 DOE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동 공청회 개최 통지문을 게시하고 모든 할당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와 할당된 학군을 대표하며 선출된 주 및 지역 관계자에게도 이를 통지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5.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은 후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으로 폐교 또는 운영 변경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된 제안은 최초의 교육적 영향 선언문에 정의된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감이 제안서를 현저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I.A.1에 명시된 양식에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된 EIS는 DOE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사본은 제 II.A.3절에 명시된 대로 과밀 CEC, 과밀 지역 위원회, 지역 학군장, 과밀학교 SLT, CCHS 및/또는 CCSE와 D75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또는 학교 운영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은 개정된 EIS를 접수한지 15일 이후에 뉴욕시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2590-h(2-a)(d-1)에 따라 공동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C. PEP 승인

1. 교육감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서를 PEP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뉴욕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2590-g(8)(a)에 따라 PEP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 안을 승인하기 전에 일반인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제안에 대해 PEP가 투표를 실시하기 45일 전까지 PEP는 DOE의 공식 웹사이트에 제안서 통지문을 게시하고 이 통지문을 모든 지역 교육감, CEC, 지역위원회, SLT가 회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제안서의 제목, 목적, 취지에 대한 설명
  - b. 교육적 영향 선언문의 전체 본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 c. 그러한 제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학군 대표의 이름,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d. 제안에 대한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
  - e. PEP가 제안에 대해 투표할 PEP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 f. 제안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3.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교육감의 제안이 PEP가 제안한 공청회 이후 수정된 경우 PEP는 투표를 하기 15일 이상 전에 수정된 공문을 발행합니다. 수정된 공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수정된 제안서의 제목, 목적, 취지에 대한 설명
  - b. 제안서의 모든 실질적인 개정 부분에 대한 확인
  - c. 최초 공표 후 제안서에 대해 수령한 일반인의 모든 의견에 대한 요약
  - d.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의 전체 본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 e. 그러한 제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학군 대표의 이름,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f. 수정된 제안에 대한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
  - g. PEP가 수정된 제안에 대해 투표할 PEP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 h. 수정된 제안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4.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고 PEP가 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PEP는 DOE의 공식 인터넷 웹 사이트에 PEP 미팅 24시간 전에 수령한 제안에 대한 일반인 의견의 평가 내용을 게시하며 여기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제안된 대안
    - b. 대안이 제안에 통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
    - c. 수령된 일반인 의견에 따라 제안서에 취해진 변경에 대한 설명
    - d. 교육적 영향 선언문 또는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의 전체 본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5. 뉴욕시 교육법 제2590-h절 하위절 (2-a) (e)항에 따라 PEP가 승인한 제안은 이 규정의 모든 해당 조항을 만족시키고 PEP 보조금이 승인된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 III. 복수 학교의 학교 운영 및 학교 건물 관리 절차의 현저한 변경

#### A. 건물위원회

1. 건물위원회는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 배치되거나 D75 학교 조직과 공동 배치된 각각의 공립학교 건물에 마련됩니다. 건물위원회는 각각의 비차터 공동 배치 학교 또는 D75 학교 조직(또는 D75 학교 조직의 교감)의 교장과 각 공동 배치 차터스쿨이 지명한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 건물의 모든 학교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일상적 운영 및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건물위원회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 <http://schools.nyc.gov/community/campusgov>에 있는 캠퍼스 정책 비망록(Campus Policy Memo)과 절차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됩니다.
2. 건물위원회는 <http://schools.nyc.gov/community/campusgov>에 있는 Campus Policy Memo 및 절차에 명시된 방법으로 학교 건물 관리와 관련된 기타 기록과 회의록 및 의제를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B. 하나 이상의 비차터스쿨 또는 특정 D75 학교 조직으로 구성된 차터스쿨 공동 배치

1. 공동 공간 위원회

- a. 공동 공간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이 하나 이상의 비차터 공립학교 또는 D75 학교 조직과 공동 배치된 각 공립학교 건물에 마련됩니다. 공동 공간 위원회는 교장(또는 D75 학교 조직의 교감), 교사, 각 공동 배치 학교나 D75 학교 조직의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비차터스쿨의 교사와 학부모 구성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공동 공간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학교의 SLT 구성원이 선정합니다.
- b. 그러한 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회의를 가집니다.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이 발효된 후(2010년 5월 28일) 공립학교 건물에 배치 또는 공동 배치를 PEP가 승인한 차터스쿨과 관련하여 공동 공간 위원회는 교육감이 마련하고 PEP가 승인한 건물 활용 계획의 구현을 검토합니다.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의 발효일 이전에 공립학교 건물에 배치 또는 공동 배치되는 것을 승인 받은 차터스쿨과 관련하여 공동 공간 위원회는 해당 빌딩의 현재 건물 공간 계획의 구현을 평가합니다.

2. 자본 증액 및 시설 업그레이드

- a.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자금 출처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공동 배치하기 위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안을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법(Education Law) 제2853절 하위절 3, d항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스쿨에 실시해야 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까지 자금을 확충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그러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담당하는 모든 작업과 구매한 소모품은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의 계산시 고려됩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스쿨을 위한 차터스쿨의 지출액 만큼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가 실시됩니다. 자금 출처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 건물 내에 이미 공동 배치된 차터스쿨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로서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자본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한 지 3개월 이내에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스쿨을 위한 차터스쿨의 지출액 만큼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가 실시됩니다.
- b. 승인 절차
  - 1) 모든 제안된 자본 증액 및 시설 업그레이드는 운영부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건물 위원회 및 공유 공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프로젝트 시행 제안 날짜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적어도 15일 이전에 운영부나 기타 지정된 담당실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차터스쿨의 자금은 제출하는 당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2) 운영부 또는 피지명인은 차터스쿨의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에 대해 권장합니다.
- 3)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차터스쿨의 운영자와 공동 배치 비차터스쿨에게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의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알립니다.
- 4) 차터스쿨의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의 원안에 대한 변경은 업무 범위를 변경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승인해야 합니다.
- 5)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승인하지 않은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차터스쿨은 차터스쿨의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3개월 전에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 공립학교를 위해 차터스쿨이 지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자금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책임집니다.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한 다른 개선책을 실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이의 제기

- 1) 공립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기 위한 제안과 건물 활용 계획을 PEP가 승인한 경우 건물 활용 계획의 제안 및/또는 구현과 준수에 대한 사항은 뉴욕 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의 §2853(3)(a-5)에 따라 교육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IV. 비상 휴교와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를 위한 절차

- A. 교육감은 비상 시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를 보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교하거나 학교 운영에 대한 현저한 변경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B. 교육감은 비상 조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성명서를 제공하고 그러한 성명서를 DOE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C. 비상 휴교 또는 운영의 변경은 최장 6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이 동안 교육감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 휴교 또는 운영의 현저한 변경을 6개월 이상 연장하기 전에 본 규정서의 모든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V. 효력 개시일

이 규정서는 PEP가 다음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 VI. 문의사항

본 규정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i>Division of Portfolio Planning</i> N.Y.C. 교육청	팩스:
212-374-5049	52 Chambers Street – Room 405 New York, NY 10007	212-374-5581
	<a href="mailto:Portfolio@schools.nyc.gov">Portfolio@schools.nyc.gov</a>	



## 단계적 폐지 및 최종 폐쇄 학교 이름 (DBN)

---

### I. 제안 요약

- 정보 확인:
  - o 학교 이름, 코드 및 제공 학년
  - o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현재 같은 빌딩에 위치한 학교 (해당되는 경우)
- 제안의 결과를 취해지는 조치 설명:
  - o 매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학년 및 학교가 폐쇄되는 연도를 포함한 제안 실행에 대한 정보 제공
- 제안된 조치의 이유:
  - o 단계적 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 범주 설명
  - o 지속적인 최저 성취도 (Persistently Lowest Achieving)에 대한 설명 (해당되는 경우)
  - o 단계적 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이 학교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 요약
  - o 제안에 이르기까지의 학교 수행 정보 및 추천에 앞선 커뮤니티의 참여

### II. 빌딩의 잠재 용도 또는 용도 제안

- 빌딩 정보:
  - o 수용 인원
  - o 현재 용도
- 제안된 빌딩 용도에 대한 설명
  - o 제안된 빌딩 용도에 추가 학교 수용이 포함된다면 빌딩 공동 사용을 제안한 EIS 참고

### III. 영향을 받는 학생, 학교 및 커뮤니티에 대한 제안의 영향

#### a. 학생

- 단계적 폐지 학교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받는 영향:
  - o 특수교육학생 (SE) 및 영어학습학생(ELL)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 및 향후 지원 계획 (해당되는 경우)
  - o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 포함 학교에 현재 등록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등록 옵션에 대해 설명

- 제안 포함된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A Pathways,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SE 와 ELL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 제안에 포함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중요한 프로그램 관련 변경 사항 설명
- 단계적 폐지 학교에 등록되었을 학생이 받는 영향:
  - 고등학교 지원서에 단계적 폐지 학교를 포함한 학생을 위한 다음 단계 설명
  - 학교가 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존에 거주하는 가정이 받는 영향 설명
  - 학생에게 주어진 대안 옵션 설명. 단계적 폐지 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내의 학교 목록 (같은 학년 제공) 및 각 학교별로 다음 정보 제공:
    - 이름
    - DBN
    - 주소
    - 등록 데이터
    - 빌딩 수용인원/사용
    - 수요 데이터 (해당되는 경우)
    - 제공 프로그램 자격 요건
    - SE 및 ELL 데이터
    -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또는 해당되는 경우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 장애인 편의시설
    - 책임 정보
  - 제공 프로그램이 받는 영향:
    - 단계적 폐지가 제안된 학교에서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해당되는 경우) 목록
    - 비슷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해당되는 경우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목록 (같은 학년 지도)
  - 장애인 편의 시설이 완비된 경우 장애인 편의 제공 빌딩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설명

**b. 학교**

- 제안으로 인해 같은 빌딩에 위치한 학교가 받는 영향:
  - 단계적 폐지로 인해 빌딩에서 줄어드는 정원 수
  - 예상 빌딩 용도
  - 빌딩 내 예상 신규 정원 수
  - 빌딩 내 제안된 신규 학교 설명 (별도 EIS 인용). 다음 정보 포함:
    - 이름
    - DBN

- 주소
- 예상 신규 등록
- 선발 범주 (해당되는 경우)
-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또는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해당되는 경우)
- 빌딩에 위치한 각 학교 별로 제안으로 인해 변경될 학습 공간 분배 설명. 또한 제안으로 인해 빌딩에 위치한 다른 학교 등록 정원에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설명
- 해당되는 경우 자본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계획 목록

### c. 커뮤니티

- 제안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받는 영향:
  - 제공 정원 및 주변 학교가 받는 영향:
    - 등록 경향
    - 수용인원 필요
    - 단계적 폐지 및 학교 출소로 인해 커뮤니티에서 줄어드는 예상 정원 수
    - 신규 학교, 학년 확대 및 지속적인 단계적 학교 신설로 인해 커뮤니티에서 늘어나는 예상 정원 수
    - 커뮤니티 내(해당되는 경우) 예상 신규 학교(같은 학년 제공) 목록 및 다음 정보 제공:
      - 이름
      - DBN
      - 주소
      - 예상 신규 등록
      - 선발 범주 (해당되는 경우)
      -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또는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해당되는 경우)
  - 학생에게 주어진 대안 옵션 설명. 단계적 폐지 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내의 학교 목록 (같은 학년 제공) 및 각 학교별로 다음 정보 제공:
    - 이름
    - DBN
    - 주소
    - 등록 데이터
    - 빌딩 수용인원/사용
    - 수요 데이터 (해당되는 경우)
    - 제공 프로그램 자격 요건
    - SE 및 ELL 데이터

-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또는 해당되는 경우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 장애인 편의시설
- 책임 정보
- 제공 프로그램이 받는 영향:
  - 단계적 폐지가 제안된 학교에서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목록
  - 비슷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해당되는 경우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목록
- 학교 연혁 및 커뮤니티 활용
  - 개교일 명시
  - 교육법 섹션 414 에 따라 단계적 폐지 장소에 학교 빌딩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커뮤니티 일원의 역량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제안의 영향 설명

####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영향을 받는 각 학교 별로 다음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 등록 정원 및 제공 학년
    - 신규 학교의 예상 등록 정원 (해당되는 경우)
    - 입학 및 자격 요건
    - 구성원 통계 정보
    - 폐지가 제안된 학교의 경우 단계적 폐지 시작에서 학교 폐교까지 매년 제공 학년 및 예상 등록 정원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영어/수학 점수
    - 뉴욕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결기록 보고서

#### V. 초기 비용 및 절약

- 학교 자금 공식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이전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되는 경우)

#### VI. 인원 필요, 지도 비용,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영향

##### a. 인원 필요

- 제안으로 인해 신설 또는 폐지되는 행정직, 비교육 및 교육 직위에 대한 영향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의 직위에 대한 총 영향 설명

**b. 지도 비용**

- 일인당 자금 액수 및 학교가 받을 기타 추가 자금 명시

**c. 행정**

- 학교 직원에 대한 영향 및 제안으로 인한 직원 수 증가 및 감소 예상치 설명. 직원이 축소되는 경우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d. 교통**

- 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공받던 교통편이 받는 영향 (해당되는 경우)

**e. 기타 지원 서비스**

**VII. 빌딩 정보**

- 빌딩 종류: 주 사용 또는 부수 사용
- 건설 연도
- 총 BCAS 평점
- 목표 용도 및 목표 수용인원
- 2009 회계 연도 유지 비용:
  - o 노동:
  - o 자재:
  - o 유지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관리 비용 (자재, 관리 할당):
- 2009 회계 연도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유류
- 현재 및 지난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자금 계획에 제안된 프로젝트
-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명시:
- 빌딩 특징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 실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 신설 학교 (DBN)와 기존 학교(DBN)의 공존

---

### I. 제안 요약

- 정보 확인:
  - o 신설학교 이름, 코드, 차터 또는 비차터 상태 및 교육대상 학년
  - o 신설학교 개교 첫 해 및 정원이 모두 확충된 후의 예상 정원
  - o 차터스쿨일 경우, 승인 당국 명시
  - o 기존 학교명, DBN 및 교육대상 학년
  - o 지역 학군, 빌딩코드 및 주소
- 본 제안의 결과 취해지는 조치 설명:
  - o 신설 학교가 자리 잡으면서 매년 추가되는 학년 및 학생의 수 등을 포함한 제안의 실행에 관한 정보 제공
- 신설 학교에 관한 설명
- 제안된 조치를 취하는 이유
  - o 공존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및 본 제안이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

### II. 빌딩의 잠재 용도 또는 용도 제안

- 빌딩 정보:
  - o 수용 인원
  - o 현재 용도
- 제안된 빌딩 용도에 대한 설명

### III. 해당 학생, 학교 및 커뮤니티에 본 제안이 끼치는 영향

#### a. 학생

- 빌딩 내 학교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받는 영향:
  - o 특수교육학생 (SE) 및 영어학습학생 (ELL)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 및 향후 지원 계획(해당되는 경우)
  - o 본 제안의 일부로서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고등학교 전형 프로그램, CTE Pathways,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SE & ELL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중요한 프로그램 관련 변경 사항 설명

#### b. 학교

- 제안으로 인해 같은 빌딩에 위치한 학교가 받는 영향:
  - 빌딩에 위치한 각 학교 별로 제안으로 인해 변경될 학습공간 분배 설명. 또한 제안으로 인해 빌딩에 위치한 다른 학교 등록 정원에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설명.
  - 제안된 공존 기간 동안, 또는 신설 학교가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매년 기존 학교와 신설학교에 제안된 공간 분배에 관한 설명을 포함. 신설학교가 차터스쿨일 경우 제안된 건물 활용 계획에 관한 설명을 첨부.
  - 각 학교의 특별 교실(예, 컴퓨터실, 과학실) 접근성 표시
  - 체육관, 카페테리아, 도서관, 놀이터 등의 공유공간에 끼칠 영향에 관한 설명. 제안된 공존 학교 사이에 이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예를 포함
  - 건물의 안전 및 보안에 끼칠 영향 설명.
  - 해당될 경우 계획된 자본 또는 시설 개선 항목 나열.

#### c. 커뮤니티

- 본 제안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받는 영향 설명:
  - 학교 정원 및 주변 학교에 끼칠 영향:
    - 등록 경향
    - 수용 인원 수요
    - 신설학교 개교 및 학년 증설, 신설학교의 단계적 확장으로 인해 해당 커뮤니티에 예상되는 증설 정원
  -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영향:
    - 해당될 경우, 제안된 신설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나열
  - 교육법 섹션 414 에 따라 해당 장소에 학교 빌딩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량에 대한 본 학교 공존 제안의 영향에 관한 설명

####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본 제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 학교 별로 다음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 등록 정원 및 제공 학년
- 신설 학교 입학 및 자격 요건(해당되는 경우)
- 입학 및 지원자격 기준
- 구성원 통계 정보
- 폐교가 제안된 학교의 경우, 단계적 폐교 시작에서 학교 폐교까지 매년 제공학년 및 예상 등록 정원 기재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영어/수학 점수
  - 뉴욕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결기록 보고서 링크

## V. 초기 비용 및 절약

- 학교 예산 공식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이전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되는 경우)

## VI. 필요 인원, 지도 비용,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영향

### a. 필요 인원

- 본 제안으로 인해 신설 또는 폐지되는 행정직, 비교육 및 교육 직위에 대한 영향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의 직위에 대한 총괄적인 영향 설명

### b. 지도 비용

- 일인당 예산액 및 학교가 받을 기타 추가 자금 명시

### c. 행정

- 학교 직원에 대한 영향 및 본 제안으로 인한 직원 수 증감 예상치 설명. 만약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의 향후 거취에 관해 설명

### d. 교통

- 본 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공받던 교통편이 받는 영향(해당되는 경우)

**e. 자금 또는 시설 개선 (차터스쿨의 경우)**

- 1998년 제정된 뉴욕주 차터스쿨법 (2010년 5월 개정)에 의거해, 기존 학교와 공존하는 차터스쿨에 대한 자금 또는 시설 개선(\$5,000 초과)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같은 빌딩에 있는 각각의 비 차터 공립학교의 자금 또는 시설개선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제안된 개선사항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190 참조.

**f. 기타 지원 서비스**

**VII. 빌딩 정보**

- 빌딩의 유형: 주 사용 또는 부수적 사용
- 건축 연도
- 총 BCAS 평점
- 목표 용도 & 목표 수용인원
- 2009 회계연도 유지비용:
  - o 인건비:
  - o 자재:
  - o 유지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관리 비용 (자재, 관리 할당):
- 2009 회계연도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유류
- 현재 및 지난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예산안에 제안된 프로젝트: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여부 명시:
- 빌딩 부대시설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 학교명 (DBN)의 건물명 (코드)에서 건물명(코드)로의 재배치

---

### I. 제안 요약

- 정보 확인:
  - o 재배치되는 학교명, 코드, 차터 또는 학군 명시
  - o 조치 실행 첫 해의 예상되는 등록인원(신설 학교의 경우) 및 현재 교육대상 학년(신설학교의 경우) 및 학교가 완전히 자리잡았을 경우의 교육대상 학년
  - o 차터스쿨일 경우 승인당국 명시
  - o 현재 소속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제안된 신규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기존의 공존하는 학교명, 코드 및 교육대상 학년
- 본 제안의 결과로 인해 취해지는 조치 설명:
  - o 재배치되는 학교에서 교육할 학년 및 학생수 등을 포함한 제안의 실행에 관한 정보 제공. 학교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 매년 추가되는 학년 및 학생 수 포함.
- 제안된 조치를 취하는 이유:
  - o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및 본 제안이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

### II. 빌딩의 잠재 용도 또는 용도 제안

- 빌딩 정보:
  - o 수용 인원
  - o 현재 용도
- 제안된 빌딩 용도에 관한 설명

### III. 해당 학생, 학교 및 커뮤니티에 본 제안이 끼치는 영향

#### a. 학생

- 기존의 학교 및 재배치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 o 특수교육학생 (SE) 및 영어학습학생 (ELL)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 및 향후 지원 계획(해당되는 경우)

- 본 제안의 일부로서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고등학교 전형 프로그램, CTE Pathways,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SE & ELL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 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중요한 프로그램 관련 변경 사항 설명
- 해당 학교의 현재 위치에서 신규 배치된 위치까지의 거리 명시
- 대중 교통으로 신규 배치된 학교까지 찾아가는 방법 및 현재 학생들의 통학 옵션(엘로 스쿨버스 또는 대중교통 트랜짓)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자세한 정보 제공.
- 현재 등록된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통학하는지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전 위치에 등록 대상이 되는 미래의 학생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 **b. 학교**

- 본 제안으로 인해 같은 빌딩에 위치한 학교가 받는 영향:
  - 빌딩에 위치한 각 학교 별로 제안으로 인해 변경될 학습공간 분배 설명. 또한 제안으로 인해 빌딩에 위치한 다른 학교 등록 정원에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설명.
  - 기존 학교 및 재배치되는 학교의 공간 분배에 관한 설명 포함. 재배치되는 학교가 신설학교일 경우, 해당 학교가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매년 기존 학교와 신설학교에 제안된 공간 분배에 관한 설명 제공. 차터스쿨이 재배치 될 경우 제안된 건물 활용 계획에 관한 설명을 첨부.
  - 각 학교의 특별 교실(예, 컴퓨터실, 과학실) 접근성 표시
  - 체육관, 카페테리아, 도서관, 놀이터 등의 공유공간에 끼칠 영향에 관한 설명. 제안된 공존 학교 사이에 이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예를 포함
  - 건물의 안전 및 보안에 끼칠 영향 설명.
  - 해당될 경우 계획된 자본 또는 시설 개선 항목 나열.
  - 해당 학교의 현재 위치에 남게 되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 **c. 커뮤니티**

- 본 제안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받는 영향:
  - 학교 정원 및 주변 학교에 끼칠 영향:
    - 등록 경향
    - 수용인원 수요

- 신설학교 개교 및 학년 증설, 신설학교의 단계적 확장으로 인해 해당 커뮤니티에 예상되는 증설 정원
-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영향:
  - 제안된 재배치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E Pathways 및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나열
- 교육법 섹션 414 에 따라 해당 장소에 학교 빌딩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량에 대한 본 학교 재배치 제안의 영향에 관한 설명

####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본 제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 학교 별로 다음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 등록 정원 및 제공 학년
    - 신설 학교 예상 정원 (해당될 경우)
    - 입학 및 지원자격 기준
    - 구성원 통계 정보
    - 폐교가 제안된 학교의 경우, 단계적 폐교 시작에서 학교 폐교까지 매년 제공학년 및 예상 등록 정원 기재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 영어/수학 점수
    - 뉴욕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결기록 보고서 링크

#### V. 초기 비용 및 절약

- 학교 예산 공식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이전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되는 경우)

#### VI. 필요 인원, 지도비용,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영향

##### a. 필요 인원

- 본 제안으로 인해 신설 또는 폐지되는 행정직, 비교육 및 교육 직위에 대한 영향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의 직위에 대한 총괄적인 영향 설명

##### b. 지도 비용

- 일인당 예산액 및 학교가 받을 기타 추가 자금 명시

**c. 행정**

- 학교 직원에 대한 영향 및 본 제안으로 인한 직원수 증감 예상치 설명 만약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의 향후 거취에 관해 설명.

**d. 교통**

- 본 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공받던 교통편이 받게 되는 영향 (해당되는 경우)

**e. 자금 또는 시설 개선 (차터스쿨의 경우)**

- 1998년 제정된 뉴욕주 차터스쿨법 (2010년 5월 개정)에 의거해, 기존 학교와 공존하는 차터스쿨에 대한 자금 또는 시설 개선(\$5,000 초과)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같은 빌딩에 있는 각각의 비 차터 공립학교의 자금 또는 시설개선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제안된 개선사항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190 참조.

**f. 기타 지원 서비스**

**VII. 빌딩 정보**

- 빌딩 유형: 주 사용, 부수적 사용
- 건축 연도
- 총 BCAS 평점
- 목표 용도 & 목표 수용인원
- 2009 회계연도 유지비용:
  - o 인건비:
  - o 자재:
  - o 유지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관리 비용 (자재, 관리 할당):
- 2009 회계연도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유류
- 현재 및 지난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예산안에 제안된 프로젝트: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여부 명시:
- 빌딩 부대시설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 학교 이름의 학년 재구성 (DBN)

---

### I. 제안 요약

- 정보 확인:
  - o 학교 이름, 코드 (DBN), 현재 제공 학년 및 학년 재구성이 끝난 후 제공 학년 제안
  - o 커뮤니티 학교 학군, 빌딩 코드 및 주소
  - o 현재 같은 빌딩에 위치한 학교 (해당되는 경우)
- 제안의 결과를 취해지는 조치 설명:
  - o 매년 폐지되거나 단계적 신설되는 학년
- 제안된 조치의 이유:
  - o 학년 재구성 필요 및 그 필요에 대처한 학년 재구성 제안 설명

### II. 빌딩의 잠재 용도 또는 용도 제안

- 빌딩 정보:
  - o 수용 인원
  - o 현재 용도
- 제안된 빌딩 용도에 대한 설명
  - o 제안된 빌딩 용도에 추가 학교 수용이 포함된다면 빌딩 공동 사용을 제안한 EIS 참고

### III. 영향을 받는 학생, 학교 및 커뮤니티에 대한 제안의 영향

#### a. 학생

- 빌딩 내 학교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받는 영향:
  - o 특수교육학생 (SE) 및 영어학습학생(ELL)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 및 향후 지원 계획 (해당되는 경우)
  - o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 포함 학교에 현재 등록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등록 옵션에 대해 설명
  - o 해당되는 경우 제안 포함된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고등학교 입학 프로그램, CTA Pathways,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SE 와 ELL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 o 해당되는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중요한 프로그램 관련 변경 사항 설명

#### b. 학교

- 제안으로 인해 같은 빌딩에 위치한 학교가 받는 영향:

- 빌딩에 위치한 각 학교 별로 제안으로 인해 변경될 학습 공간 분배 설명.  
또한 제안으로 인해 빌딩에 위치한 다른 학교 등록 정원에 직접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설명
- 제안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경우 잠재적 용도 설명

### c. 커뮤니티

- 제안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받는 영향
  - 학년 수용 인원 에 대한 전체 영향
  - 학군 내 학년별 정원에 대한 총 영향(본 제안 및 기타 단계적 폐지 및/또는 학년 재구성으로 인한 변화)
    - 각 학교, 각 학년 별 정원 증가 또는 감소
    - 학군 내 제공되는 정원이 받는 영향 설명
  - 교육법 섹션 414 에 따라 단계적 폐지 장소에 학교 빌딩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커뮤니티 일원의 역량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제안의 영향 설명

## IV. 등록, 입학 및 학교 수행 정보

- 제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 학교 또는 변화하는 학교 별로 다음 정보 제공:
  - 등록 데이터
    - 현 등록 정원 및 제공 학년
    - 입학 및 자격 요건
    - 구성원 통계 정보
    - 폐지가 제안된 학교의 경우 단계적 폐지 시작에서 학교 폐교까지 매년 제공 학년 및 예상 등록 정원
  - 수행 데이터:
    - 진척 보고서 성적
    - 졸업률 및/또는 영어/수학 점수
    - 뉴욕주 책임 현황
    - 평균 출석률 및 출결기록 보고서

## V. 초기 비용 및 절약

- 학교 자금 공식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이전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되는 경우)

## VI. 인원 필요, 지도 비용, 행정, 교통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영향

### a. 인원 필요

- 제안으로 인해 신설 또는 폐지되는 행정직, 비교육 및 교육 직위에 대한 영향 설명
- 학군 및/또는 시스템의 직위에 대한 총 영향 설명

### b. 지도 비용

- 일인당 자금 액수 및 학교가 받을 기타 추가 자금 명시

**c. 행정**

- 학교 직원에 대한 영향 및 제안으로 인한 직원 수 증가 및 감소 예상치 설명.  
직원이 축소되는 경우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d. 교통**

- 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공받던 교통편이 받는 영향 (해당되는 경우)

**a. 기타 지원 서비스**

-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안된 학년 재구성의 영향 설명

**VII. 빌딩 정보**

- 빌딩 종류: 주 사용 또는 부수 사용
- 건설 연도
- 총 BCAS 평점
- 목표 용도 및 목표 수용인원
- 2009 회계 연도 유지 비용:
  - o 노동:
  - o 자재:
  - o 유지 및 보수 계약:
  - o 서비스 계약:
  - o 관리 비용 (자재, 관리 할당):
- 2009 회계 연도 에너지 비용:
  - o 전기
  - o 가스
  - o 유류
- 현재 및 지난 학년도에 완성된 프로젝트
- 자금 계획에 제안된 프로젝트
-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명시:
- 빌딩 특징 목록: 체육관, 강당, 과학 실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건물 활용 계획**

1998년 뉴욕주 차터 스쿨 법안(2010년 5월에 개정되었음)에 따라, 다음의 계획은 차터 스쿨 X 및 교육청 학교 X 사이의 교실 및 행정실 공간의 배정과 관련된 제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카페테리아, 도서관, 체육관 및 휴식 공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차터 스쿨 X 및 교육청 학교 X 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공유 하는데 필요한 리소스 및 공간 사용과 관련된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 및 보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공존하는 학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통한 결정을 위한 제안된 전략 및 공유 공간 담당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된다면 제안된 공존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 첨부된 교육 영향 평가서(Educational Impact Stat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저희는 뉴욕시 교육청(“DOE”)의 교육관련 풋프린트 (“Footprint”)<sup>1</sup>를 이 계획에 포함된 모든 학교 및/또는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적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각 학교 및/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해당 건물에서 생활하는 전체 등록 학생수, 공존하는 학교들의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필요, 및 건물 내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공간의 물리적인 위치의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교실 및 행정실 공간 배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관한 증명

풋프린트는 학교에 배정된 기본적인 교실 숫자를 학교에서 교육하는 학년 레벨 및 학년 별 학급 숫자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풋프린트는 해당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재 학급 수와 규모를 반영하고 공간 계획 담당 보로 디렉터와 학교의 교장이 함께 건물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유아원-5 학년 또는 유치원-5 학년을 교육하는 초등학교에서 풋프린트는 클래스들을 독립적인 것(self-contained)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풋프린트는 각 일반교육 학급 또는 협력 팀 교사 섹션에 한 개의 풀 사이즈 교실을 배정하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각 독립적인 특수교육 섹션의 운영을 위해 풀 사이즈 또는 하프 사이즈의 교실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업을 위한 수용범위가 정해진 교실에 더해 유치원-5 학년을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 클러스터 또는 특화된 교실을 배정받습니다. 이런 교실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미술 및/또는 음악 교육을 포함한 기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레벨에서 클러스터 교실은 다음과 같이 배정될 것입니다:

등록	클러스터 교실 숫자
1,251 이상	5
750-1,250	4
251-750	3
151-250	2
0-150	1

<sup>1</sup> 풋프린트(Footprint)는 교육청 관할 건물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풋프린트의 목적은 모든 학교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풋프린트의 요약된 범위인, 공존 합의서(co-location agreement)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간 배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지침서로 활용될 것입니다. 교육청 풋프린트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chools.nyc.gov/NR/rdonlyres/8CF30F41-DE25-4C30-92DE-731949919FC3/65901/NYCDOE\\_Instructional\\_Footprint\\_revisedMay2009\\_noco.pdf](http://schools.nyc.gov/NR/rdonlyres/8CF30F41-DE25-4C30-92DE-731949919FC3/65901/NYCDOE_Instructional_Footprint_revisedMay2009_noco.pdf)

6-12 학년을 위한 풋프린트는 학생들이 교실 사이를 이동하며 교실들이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고 간주합니다. 이 풋프린트는 각 일반교육 또는 협력 팀 교사 섹션 당 한 개의 풀 사이즈 교실을 배정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 독립적인 특수교육 섹션 당 풀 사이즈 또는 하프 사이즈 교실을 배정합니다. 이 풋프린트는 각 교사 별로 지정된 교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학교장은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업일 중에 다양한 목적으로 교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 지원 서비스 및 리소스 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략 2 개의 풀 사이즈 교실<sup>2</sup>을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학교는 행정실로 사용하기 위한 1 개의 풀 사이즈 교실 및 하프 사이즈의 교실을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풋프린트에 규정된 것과 같이 배정되지 않은 모든 공간은, 공존하는 학교에 합리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배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청은 공존하는 학교의 상대적인 등록 학생수, 공존하는 학교들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성 및 건물 내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공간의 물리적인 위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풋프린트가 기초적인 공간 배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리더들은 학교에 배정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에 배정된 공간 내에서 어떻게 어디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된 서비스를 학생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적합할 경우 학교 리더들은 장애 학생들의 긍정적인 교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실로부터 경험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교실 및 행정실 공간 배정

건물 직접 점검 및 XXX 에 대해 공간 계획 디렉터 XXX 가 실시한 설문에 따라, 건물 XX [건물 코드를 입력]는 전체 XX 개의 풀 사이즈 교실<sup>3</sup>, X 과학 실험실(위치한 경우), X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sup>4</sup> 및 XX 개의 행정실이 있습니다. XX 건물은 또한 (적용되는 모든 것 기재) 체육관, 강당, 식당 및 도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에 지역사회 조직 및 기타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제안된 공동 입주의 결과로 커뮤니티 조직 및 기타 단체가 영향을 받을 지의 여부를 기록하십시오.]

<sup>2</sup> 뉴욕시 전역에 위치한 다양한 교육청 건물의 모양에 따라, 학교들은 학생 지원 서비스 또는 리소스 룸으로 2 개의 풀 사이즈 교실과 동일한 규모인 4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또는 1 개의 풀 사이즈 교실과 2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등으로 공간을 제공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sup>3</sup> 풀 사이즈 교실은 500 스퀘어 피트 또는 그 이상의 규모입니다.

<sup>4</sup> 하프 사이즈 교실은 500 스퀘어 피트 이하의 규모입니다.

2011-2012

현재 등록현황<sup>5</sup>에 따라, 교육청 학교 X는 전체 X 명의 학생을 X 개의 클래스(유아원 학생 및 장애 학생 포함)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풋프린트에 따라 교육청 학교 X는 X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X 개의 행정실이 필요합니다.<sup>6</sup> [과거의 등록 관행에 따라 예상되는 등록현황을 기록]

2011-2012 학년도의 차터(계약)에 따라, 차터 스쿨 X는 전체 XXX-XXX 명의 학생을 X-X 학년의, X 클래스(장애 학생 포함)에서 교육할 것입니다. 차터 스쿨 X는 풋프린트에 따라 X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X 개의 행정실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청 학교 X 및 차터 스쿨 X가 풋프린트에 따라 기본적인 교실 배정을 받고 나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이 X 건물에 남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 학교 X는 해당 학교에 배정된 기초 공간 배정에 추가적으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을 배정 받게 될 것입니다.<sup>7</sup> 차터 스쿨 X는 해당 학교에 배정된 기초 공간 배정에 추가적으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을 배정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정을 한 이유 설명(예. 이런 배정은 공존하는 학교들의 상대적인 등록현황, 공존하는 학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 (설명요) 또는 건물 내의 추가적인 공간의 실질적인 위치(설명요)에 따른 것입니다.]

2011-2012 공간 배정 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이 종합될 수 있습니다:

	2011-2012 예상되는 학급 <sup>8</sup> 수	풋프린트에 따른 풀 사이즈 교실	풋프린트에 따른 하프 사이즈 교실	풋프린트에 따른 행정실	추가적인 풀 사이즈 교실	추가적인 하프 사이즈 교실	추가적인 행정실
교육청 학교 X							
차터 스쿨 X							

2012-(공존하는 학교에 년도 별 스케일)

차터 스쿨 X는 전체 교육 대상학년(grade span) X-X를 교육하게 될 XXXX-XXXX 학년도(school year)까지 매년 X 섹션(section)에 추가적으로 XXX-XXX 명의 학생(student)을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학급 숫자에 따라 학년도 별 일련의 교실 배정 계획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sup>5</sup> ATS의 [날짜 DATE]에 따른 것임

<sup>6</sup> 등록현황 예상은 4월 이전에 마감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수정으로 인해 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sup>7</sup> 최종 등록 예상 결과에 따라 이 숫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sup>8</sup> 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8학년 학교에서 클래스 숫자는 클래스의 전체 개수 또는 학생들의 교육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섹션입니다. 차터 스쿨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8학년 학생에서 클래스 숫자 정보는 ATS에서 검색하고 모든 유아원, 협력 팀 교육, 독립 및 일반교육 학급을 포함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클래스 숫자 정보는 HSST에서 검색하고 협력 팀 교육, 독립 및 일반교육 학급을 포함합니다. 차터 스쿨에서 클래스 수 숫자 정보는 학교의 차터 신청서에서 검토합니다.

2012-2013

풋프린트에 따라 각 학교에서 기본적인 공간 배정을 받은 후 2012-2013 에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이 X 건물에 남게 될 것입니다. 2012-2013 에 교육청 학교 X 는 상기 기초 공간 배정에 더해 추가적으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을 배정 받게 될 것입니다.<sup>9</sup>

차터 스쿨 X 는 해당 학교에 배정된 기초 공간 배정에 추가적으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을 배정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정을 한 이유 설명(예. 이런 배정은 공존하는 학교들의 상대적인 등록현황, 공존하는 학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설명요) 또는 건물 내의 추가적인 공간의 실질적인 위치(설명요)에 따른 것입니다.)]

	2012-2013 예상되는 학급 수	풋프린트에 따른 풀 사이즈 교실	풋프린트에 따른 하프 사이즈 교실	교육관련 풋프린트에 따른 행정실	추가적인 풀 사이즈 교실	추가적인 하프 사이즈 교실	추가적인 행정실
교육청 학교 X							
차터 스쿨 X							

2013-2014

풋프린트에 따라 각 학교에서 기본적인 공간 배정을 받은 후 2013-2014 에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이 X 건물에 남게 될 것입니다. 2013-2014 에 교육청 학교 X 는 상기 기초 공간 배정에 더해 추가적으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을 배정 받게 될 것입니다.<sup>10</sup> 차터 스쿨 X 는 해당 학교에 배정된 기초 공간 배정에 추가적으로 X 개의 풀 사이즈 교실, X 개의 하프 사이즈 교실 및 X 개의 행정실을 배정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정을 한 이유 설명(예. 이런 배정은 공존하는 학교들의 상대적인 등록현황, 공존하는 학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설명요) 또는 건물 내의 추가적인 공간의 실질적인 위치(설명요)에 따른 것입니다.)]

	2013-2014 예상되는 학급 수	풋프린트에 따른 풀 사이즈 교실	풋프린트에 따른 하프 사이즈 교실	풋프린트에 따른 전체 행정실 수	추가적인 풀 사이즈 교실	추가적인 하프 사이즈 교실	추가적인 행정실
교육청 학교 X							
차터 스쿨 X							

<sup>9</sup>최종 등록 예상 결과에 따라 이 숫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sup>10</sup> 최종 등록 예상 결과에 따라 이 숫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존하는 학교가 완전한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매 학년도 표를 포함하십시오)

[교육청 학교 X 및 차터 스쿨 X가 건물 코드 X인 건물에서 차터 스쿨 X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를 기록해 주십시오. 공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청 학교 X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공간 공유 계획**

제안된 공간 공유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계획은 각 공존하는 학교들이 각 각의 건물 X에서의 공유 면적을 이용하기로 예상된 시간에 기초한 것입니다. 최종 공유 공간사용 일정은 제안된 공존 공간이 교육 정책 패널(Panel for Education Policy)에서 승인을 받은 후 건물 위원회(Building Council)와 협력하여 초안이 작성 될 것입니다.

교실 및 행정실 공간 배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관한 증명

제안된 계획은 공존하는 각 학교의 학생 규모를 각 공유하는 공간의 비율적인 배정 시간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건물 위원회는 협력적으로 건물 위원회에서 최종 공간 공유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각 학교 내의 모든 특별한 학생 집단 및 단체의 특정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간의 비율적인 배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이 공간의 비율적인 배분의 변경을 통한 것이라면 건물 위원회는 이런 변경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빌딩 위원회는 매년 등록 현황 또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공간 공유 계획 및 일정을 재검토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고 진척이 어려워 진다면 빌딩 위원회는 다음에 안내된 캠퍼스 정책 메모에 요약된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 학교 X의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X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터 스쿨의 계획에 따르면 차터 스쿨 X는 전체 X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표는 해당 공간에서 운영되는 각 학교의 비율적으로 배정된 시간 내에 사용되는 모든 공유 공간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45 분 간의 수업시간 숫자)]

공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카페테리아(공간의 수용력____)					

도서관					
체육관(모든 체육시설, 무용 및 피트니스 룸)					
강당					
놀이터 (초등학교/중학교)					
기타____(공유한다면 과학 실험실)					

**건물의 안전과 보안**

교육감 규정서 A-414 에 따라 모든 학교/캠퍼스는 반드시 학교 안전 위원회(School Safety Committee)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안 절차의 수립,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 기대치 및 책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해당 학교에 특히 필요한 예방 및 중재 전략 프로그램의 기획 등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장; 건물에 위치한 모든 기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대표; 미국 교사 연합 지부 리더; 건물 관리/유지 담당 직원; 및 학교에 거주하는 학교 안전 요원 레벨 III 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커뮤니티의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 및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안 측정법, 중재 및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에게 적절한 추천을 하여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일상적인 건물 운영 수칙을 결정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규정한 종합 학교 안전 계획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뉴욕시 차원에서 준비된 안전 계획 개요에 부합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학교 내 에서 운영되는 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학교 안전 계획에 해당 프로그램의 특별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안전 계획은 보안 필요성, 조직과 건물 상태의 변화 및 기타 요소 등의 변경에 발 맞출 수 있도록 학교 안전 위원회에서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안전 계획의 변경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안내된 바에 부합하기 위해, 차터 스쿨 X 의 리더/대리인은 X 학교 안전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교 안전 위원회의 멤버로써 차터 스쿨 X 의 리더/대리인은 건물의 안전 계획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X 차터 스쿨과 공존하는 학교에서 제기하는 보안 관련 문제 또는 필요성을 충족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학교 X 건물의 안전 계획은 공존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보안상 어떤 문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히 변경될 것입니다. X 차터 스쿨은 학교 건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학교의 전반적인 보안 계획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각 학교 건물은 반드시 또한 각 캠퍼스의 학교들의 훈련을 받은 교직원 멤버들로 구성하여 응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건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행사가 진행될 때를 대비한 건물 대응 팀(Building Response Team: BRT)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팀의 멤버들은 반드시 학교 안전 계획에 성명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학교 X 를 위한 완성된 안전 계획은 학교와 청소년 담당실의 보조 안전 디렉터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학교 안전 위원회는 조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안전 계획이 승인되면, 뉴욕시 경찰청에 최종 승인과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될 것입니다.

### 제안된 커뮤니케이션 전략

캠퍼스 정책 메모(Campus Policy Memo) 2010<sup>1</sup>에 따라, 캠퍼스에 공존하는 학교들은 반드시 능동적으로 건물의 모든 학교들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관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캠퍼스 조직인 건물 위원회(Building Council: BC)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교장 및 차터 리더들만이 BC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C는 공존하는 건물에 위치한 모든 학교들의 유연한 운영과 교육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1 달에 한번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BC 교장 및 차터 스쿨 리더들은 해당되는 경우 함께 결정한 내용,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 공간 공유, 캠퍼스 일정, 교직원 합의 분담 및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해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유 공간 담당 위원회(Shared Space Committee: SSC)는 교육감 규정 A-190와 같이 학교의 교장 및/또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으로써 1 곳 또는 그 이상의 차터 스쿨이 아닌 학교 또는 자격을 갖춘 75 학군 프로그램과 함께 공립 학교 건물에서 공존하는 차터 스쿨이 있는 경우 결성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차터 스쿨 법안의 효력일인 2010년 5월 28일 이후 승인된 차터 공존에 관한 승인을 존중하며 PEP에 승인을 받으면 SSC는 건물 활용 계획(BUP)의 실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개정된 차터 스쿨 법안의 효력 발생일 전에 공립학교 건물에 위치 또는 공존하기로 승인된 차터 스쿨을 고려하여, SSC는 이런 건물의 공간에 대한 현재 건물 공간 계획의 실행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SSC는 각각의 공존하는 학교 별 1인의 교장, 1인의 교사 및 1인의 학부모로 구성될 것입니다. 차터 스쿨이 아닌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 멤버를 고려하여 이런 SSC 멤버들은 해당 학교의 SLT 멤버의 구성에 대응하는 멤버 중에서 선택될 것입니다. 차터 스쿨 리더들은 본인이 관장하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부모 및 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SSC 안건 및 회의록은 BC와 공유될 것입니다. SSC 멤버들은 BUP 및 이것을 해당 캠퍼스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관해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알리도록 문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안된 협력적인 결정 전략

BC 멤버들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동등한 권리를 가진 파트너들입니다; 이들 멤버는 건물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서로의 독특한 문화를 존중하고 동시에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 및 학교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의사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모든 캠퍼스 실행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물 운영에 관한 어떤 문제를 BC에서 함께 해결할 수 없다면 2010 캠퍼스 정책 메모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sup>1</sup> 캠퍼스 정책 메모 2010은 <http://schools.nyc.gov/community/campus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